

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

(권재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19-
----------	-------

발의일자	2019. 8. .
발 의 자	권재경 의원 (인)

1. 제안이유

-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교복구입비 지원대상, 지원금액,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3조 ~ 제6조)
- 다. 다른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7조)
- 라.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 제4조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
- 나. 예산조치 : 2019년 추경예산 반영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인구교육과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19. . . ~ . .
 - 나) 예고결과 :
 - 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3) 비용추계서 : 불임
 - 4) 성별영향분석 :

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.
2. “교복”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.
3. “교복구입비”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교복구입비의 지원)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 대상)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호에 해당하는 중·고등학생으로 한다.

1.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2.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3. 타 시·군에서 전입하는 학생

제5조(지원 금액)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

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.

1.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
2.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

제6조(지원 절차)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

제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·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제7조(다른 기관과의 협력)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환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

□ 학생 인적사항

성 명		생년월일		성 별	남, 여
학 교	() 학교 학년 반 번				
주 소	※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				

☐ 신청인(부모 또는 보호자) 인적사항

성명		생년월일		성별	남, 여
은행명		계좌번호	※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※ 통장사본 필수제출		
연락처			학생과의 관계		

☐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(해당란에 “○” 표시)

지원 여부	지원받음 (), 지원받지 않음 ()	지원 금액	원
-------	---	-------	---

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.

일 일 년

신청인(부모 또는 보호자)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	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: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(입학) 확인 ② 수집·이용·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• 학 생 - 성명, 생년월일, 학교, 주소(전입일자 포함) • 신청인 - 성명, 연락처, 은행, 계좌번호,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: 학교 등 교육기관 ※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. ▶ 위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(☐ 예, ☐ 아니오) 학 생: (서명 또는 인) 보호자(부모 또는 법정대리인) 성 명: (서명 또는 인) 연락처: 관 계: 지원 대상 학생의 ※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(별지2호 서식)

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

※ 해당하는 곳에 ✓ 표시 (☐ 중 · 고등학교 / ☐ 읍 · 면)

연 번	신청 학생 인적사항					대상 학생 여부	중복수혜 여부 (해당란에 ○표시)		비고
	반	성 명	생년월일	성별	주 소		일 부 지 원	수 혜 없 음	
						적 합 부적합	금 액 기 재		

확 인 자 : ○○학교장 또는 ○○읍 · 면장 (직인)

거창군수 귀하

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관련조문

제5조(지원 금액)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
군수가 정한다.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결과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합계
소계		360	360	360	360	360	2,425
세출	군비	360	275	180	180	180	1,800
세입	도비	-	85	180	180	180	625

3. 관련의견 :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

II.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

1. 교복구입비 : 평균 1,200명 × 300천원 = 360백만원

2. 신입생 예상인원(2019.1월 인구현황 기준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합계
계	1,162	1,101	1,133	1,024	1,011	
중학생	465	567	569	502	475	2,578
고등학생	697	534	564	522	536	2,853

※ 교복 미착용 학교 현황 : 거창고, 셋별중, 웅양중, 거창중 고제분교,
거창중 신원분교

관계법령

□ 「교육기본법」

[시행 2017. 6. 22.] [법률 제14601호, 2017. 3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□ 「전자정부법」

[시행 2017. 10. 24.] [법률 제14914호, 2017. 10. 24., 일부개정]

제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·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,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